

03

미국 셰일가스사업 참여 관련 계약 연구 - 공동개발사업계약 위주로

법무법인(유) 광장 김진 변호사

I. 서문

공동개발사업계약(Participation Agreement; 이하, “PA”)는 석유개발에 동업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에 관한 계약의 한 형태이다. 계약 당사자들 간의 합의사항이 다양한 바, 일정한 양식의 PA가 있다거나 PA는 이런 계약서를 말한다고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석유개발에 동업자들이 참여함에 있어서 체결하는 PA라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면 좋다는 정도의 설명이 가능할 뿐이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 셰일지층(shale formation) 석유개발에 관해 동업자들 간에 체결하는 PA를 소개한다. 이 논문에 활용된 PA는 2013년 7월 31일자로 체결된 Participation Agreement by and between Admiral A Holding L.P., Admiral B Holding L.P. and EXCO Operating Company, LP(이하, “KKR-EXCO PA”)¹⁾로서, KKR-EXCO PA의 사실상 계약당사자들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사모펀드 회사인 케이케이알(KKR; 이하 “KKR”) 및 미국 셰일지층 석유개발 주역의 하나인 엑스코 자원 주식회사(EXCO Resources, Inc.; 이하 “EXCO”)이다.

통상적으로 석유개발사업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은 대출 부분에 치중하였으나, 셰일지층 석유개발이 활발해 지면서 금융이 적극적으로 지분 참여 방식의 투자에도 참여하고 있다.

1)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316300/000031630013000046/ex1050.htm> 참고

최근까지 지속되는 국제유가의 침체로 인해세일지층 석유개발 사업에 금융이 직접 당사자 형식으로 참여하는 거래는 보기 드물게 줄어 든 것 같다. 다만, 2017년에 유명한 세일가스 개발업체인 Sandridge사가 실체를 감춘 펀드로부터 최대 미화 2억불의 투자를 받아 오클라호마(Oklahoma)주의 세일지층 개발을 할 예정임이 보도된 바 있기는 하다.²⁾

KKR-EXCO PA는 세일지층 개발에 관한 동업자들이 기본적으로 합의하는 사항에 더하여, 금융이 동업자로 참여할 때 상대방 동업자인 석유개발업체에게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II. 세일지층

미국의 석유개발역사는 185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타이티스빌(Titusville)에서 Drake 씨³⁾가 (단순히 땅을 파낸 것이 아닌) 시추(즉, 땅에 천공을 낼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굴착한 것)를 통해 석유를 발견한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흔히 말한다. 최근 급속히 세계 에너지 구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되는 세일혁명은 조지 밋첼(George P. Mitchell)⁴⁾이라는 분이 설립한 밋첼 에너지 및 개발 주식회사(Mitchell Energy & Development Corp.)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세일지층(정확하게는 미국 텍사스주의 바넷세일(Barnett Shale))에서 경제성 있는 천연가스 생산을 위해 수압파쇄(hydraulic fracturing) 기법을 적용한 것이 그 근간이다.⁵⁾

기존의 석유개발은 자연적인 압력을 통해 암석층에서 부존하고 흐르는 원유(crude oil) 및/또는 천연가스(natural gas)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세일지층에 있는

2) https://www.enidnews.com/oklahoma/news/sandridge-energy-enters-million-nw-stack-drilling-agreement/article_e726f038-8269-5db8-bd5e-39d4325f3fe1.html 참고

3) http://www.pbs.org/wgbh/theymadeamerica/whomade/drake_hi.html 참고

4) https://en.wikipedia.org/wiki/George_P._Mitchell 참고

5) Wang, Zhongmin, et al., "A Retrospective Review of Shale Gas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 What Led to the Boom?" (미국에서의 세일가스개발 되돌아보기 - 무엇이 폭발적 성장을 불렀나?), RFF DP 13-12 (2013) (<https://www.rff.org/publications/working-papers/a-retrospective-review-of-shale-gas-development-in-the-united-states-what-led-to-the-boom/>), pages15-28 참고

원유나 천연가스는 석유가 생성되는 근원암(source rock)에 갇혀 있거나 또는 이동하였으나 투과가 불가능한 암석에 갇혀 있는 천연자원이다. 셰일지층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것은 기존의 석유가스 개발과는 다른 공법이 필요했고, 수압파쇄 공법과 수평시추(horizontal drilling) 공법이 결합하여 셰일지층에서의 석유 추출 방법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⁶⁾

셰일가스 생산으로부터 시작된 셰일지층 석유개발은 원유 및 액성 천연가스(natural gas liquids)생산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였다. 천연가스에 비해 원유 및 액성 천연가스가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영향으로 인해 원유 및 액성 천연가스 생산성이 좋은 셰일지층이 있는 (North Dakota주를 중심으로 펼쳐진) 바켄(Bakken)셰일지층이나 (남부 Texas 주 일대의) 이글 포드(Eagle Ford)셰일지층 지역에 투자가 활발하였다.⁷⁾

III. KKR-EXCO PA 관련 거래 배경

KKR-EXCO PA가 체결된 배경에는 EXCO와 체사피크 에너지 주식회사 (Chesapeake Energy Corporation; 이하 “Chesapeake”)와의 거래가 있었다. 2013년 7월 2일자로 EXCO는 Chesapeake의 자회사로부터 미화 1억불 규모의 가격으로 해인즈빌 (Haynesville) 및 이글 포드 셰일지역에 소재한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자산 및 미개발자산⁸⁾을 인수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⁹⁾

이글 포드 자산에 대한 인수계약(이하, “CHK PSA”)¹⁰⁾은 미화6억8천5백3십만 불 (US\$685.3 million)을 인수가격으로 하여 2013년 7월 31일자로 계약완결이 되었다.¹¹⁾

6) <http://www.lse.ac.uk/GranthamInstitute/faqs/shale-gas-extracted-fracking-frackings-impacts/> 참고

7) https://www.energy.gov/sites/prod/files/2015/06/f22/Appendix%20B-%20Natural%20Gas_1.pdf 및 https://en.wikipedia.org/wiki/Bakken_Formation 참고

8) 석유 부존량이 확인되었으나 실제 생산을 위한 개발은 이뤄지지 않은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미국 석유개발업계 용어상 proved undeveloped (PUD) reserves라고도 함.

9) EXCO가 2013년8월7일자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제출한 Form 10-Q (available at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316300/000031630013000046/xco201363010q.htm>) 참고

10) 2013년7월2일자 Eagle Ford Purchase and Sale Agreement by and between Chesapeake Exploration, LLC (the “Seller”) and EXCO Operating Company (the “Buyer”);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316300/000119312514135468/d703337dex991.htm> 참고

인수 자산은 약 300개 정도의 시추대상지역 및 (보유분 기준으로(net))¹²⁾ 약 55,000 에이커(acre)에 소재하는 120개의 유정(well)에 대한 운영권¹³⁾ 지분이 포함되었다.¹⁴⁾ 이글 포드 인수 계약에 관련하여 인수 자산 인근에 위치한 그리고 Chesapeake가 보유한 (보유분 기준으로) 약 147,000 에이커에 대해서는 EXCO와 Chesapeake간에 지분양도계약(farmout agreement; 이하 “Farmout Agreement”)을 체결하였다.¹⁵⁾

이글 포드 자산 인수 완결과 관련해서, 2013년 7월 31일자로 EXCO는 KKR과 KKR-EXCO PA를 체결하여, 약 미화1억3천9십만불(US\$130.9 million)의 판매가격에 미개발자산(이하, “Area 1 Leases”)¹⁶⁾ 50% 지분을 KKR에게 매각하였다.¹⁷⁾ 그 당시 EXCO는 자산인수 자금 확보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신용범위를 대폭 증액하는 계약을 하였고 자산인수 후 KKR에게 매각한 수익금을 2012년 7월 31일까지 대출금 상환에 사용해야 했다.¹⁸⁾

IV. KKR-EXCO PA 내용

A. 개괄적 소개

KKR-EXCO PA는 이글 포드 미개발자산의 향후 개발을 위한 비용을 공동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¹⁹⁾ 구체적으로는, KKR이 시추에 참여하는 각 유정(well) 경우, EXCO가 그

11)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316300/000119312514135468/d703337dex991.htm> 참고

12) Net acre라는 표현을 번역한 것임. 예를 들어, 미국 석유개발 리스(lease)에서 해당 리스 대상 토지는 100 에이커이고 임대인(lessee)는 두 회사이고 그 두 회사가 해당 리스에 대해 각각 50% 지분을 보유한 경우, 각 회사의 net acre는 50 에이커임.

13) 석유개발업계에서 운영권(operatorship)이라는 의미는 탐사, 개발, 생산 전반에 거친 모든 작업을 총괄해서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권한을 의미하고, 특정 광구에서 운영권을 가진 석유개발회사는 통상적으로 한 개의 회사이며 이런 회사를 운영권자(operator)라고 지칭함. 여러 개의 석유개발회사가 합작회사를 설립해서 그 합작회사를 운영권자로 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통상적인 방법은 아님.

14) 각주 8 참고

15) 각주 8 참고

16) KKR-EXCO PA 1조에서 “Area 1 Leases”라고 정의된 석유개발 리스(leases)에 대한 Chesapeake의 모든 권리를 의미함.

17) 각주 8 참고.

18) 각주 8 참고

유정(well)에 관해 보유한 자신 지분의 50%(즉, 100%를 기준으로 50%를 가지고 있던 EXCO가 그 50%의 절반에 해당하는 전체 기준 25%)을 KKR에게 양도하고, 그 결과 KKR은 그 유정(well) 시추 비용을 75% 부담하고 그 유정(well)을 75% 소유하게 되며 EXCO는 25% 부담 및 소유를 하게 된다.²⁰⁾ 생산 개시 후 1년이 지난 유정(well)들을 대상으로 그에 관한 KKR의 75% 참여 지분(working interest)²¹⁾을 KKR-EXCO PA상 규정된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에 EXCO가 매입하겠다는 제안을 각 Quarter (이하, “Quarter”)²²⁾ 별로 해야 하며, 어떤 유정(well)이 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규정과 KKR의 최대수익률에 대한 제한이 적용된다.²³⁾

이하에서 각 주요 항목을 분석한다.

B. 탐사지역 표기

석유개발 사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어떤 지역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어떤 탐사대상 지층에서 탐사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²⁴⁾ 탐사지역을 제대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크게 지질학적 설명(geological description)과 지리학적 설명(geographical description)이 병행되어야 한다.²⁵⁾

KKR-EXCO PA는 이글 포드 셰일지층(이하, “Eagle Ford Formation”)²⁶⁾을 탐사대상 지층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관해 “the interval below the base of the Austin Chalk (5,512 feet) and above the top of the Buda Lime (5,744 feet) as seen in the Traylor North #1 H, API #42507327460000 in Zavala County, Texas”라고 기술하고 있다.

19) 각주 8 참고

20) 각주 8 참고

21) Working interest(사업지분)란 석유 탐사, 개발 및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고 그 대가로 생산을 통한 이익에 참여할 수 있는 지분 권리를 의미함.

22) KKR-EXCO PA 1조 정의 참고. (매년 3월31일, 6월30일, 9월30일 및 12월31일에 종료되는 각 3개월 기간을 의미함)

23) 각주 8 참고

24) Villarreal, Debra, et al., “Oil and Gas Exploration and Development Agreements”(석유 및 가스 탐사 및 개발 계약서), 31 Energy & Min. L. Inst. (2010), page 328 참고

25) 각주 8 참고

26) KKR-EXCO PA 1항 “Eagle Ford Formation” 정의 참고

대상 지층이 어디를 의미하는지를 표현하기 위해 “the interval below the base of the Austin Chalk (5,512 feet) and above the top of the Buda Lime (5,744 feet)” 즉 “5,512 feet상의 Austin Chalk지층 하부와 5,744 feet상의 Buda Lime지층 상부 사이의 공간”이라는 지질학적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지질학적 설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텍사스주 자발라군(Zavala County)에 시추된 유정의 고유 등록 번호인 “Taylor North #1 H, API #42507327460000”을 언급하면서 “이 유정에서 관찰한 공간”을 의미한다고 기술해 둔 것이다.

KKR-EXCO PA에서는 적격 유정 기준(Qualifying Well Criteria; 이하, “Qualifying Well Criteria”)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KKR-EXCO PA하의 시추 대상이 되는 유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의 하나로 “Eagle Ford Formation에서 생산되는 유정”이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²⁷⁾ 반면, Eagle Ford Formation이 지리학적으로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C. 탐사지역내의 기존 보유 자산

PA 참여자가 탐사지역 안에 보유하는 석유개발 리스(oil & gas lease)가 있을 경우, 다른 참여자들이 일정 금액의 보상을 하고 그 리스에 지분 참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²⁸⁾

KKR-EXCO PA에서 인수대상으로 하는 석유개발 자산은 EXCO가 기존에 보유한 자산이 아닌 Chesapeake 보유 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²⁹⁾ KKR-EXCO PA에 따른 KKR의 (EXCO를 통한) Chesapeake 자산 인수는 기본적으로 CHK PSA에 따라 EXCO가 Chesapeake 자산 인수를 완결하는 것과 동시에 완결되도록 구성되어 있다.³⁰⁾ 이로 인해, KKR-EXCO PA는 탐사지역내의 자산 취득에 관련하여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담고 있다.

27) KKR-EXCO PA의 1조 “Qualifying Well Criteria”(적합 유정 범주) 정의 참고

28) 각주 22 Villarreal, page 332 참고

29) KKR-EXCO PA의 Recitals 참고

30) KKR-EXCO PA의 Recitals “F”항 참고

C.1. 탐사지역 소재 광구로서 탐사가 시행되었거나 또는 생산이 되는 것

탐사지역에 탐사가 시행되었거나 생산이 되는 광구가 있을 경우, 이를 PA의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동업자들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³¹⁾ KKR-EXCO PA 경우, 이러한 광구는 공동참여사업에서 배제하고 있다.³²⁾

입수 가능한 KKR-EXCO PA 범위가 계약서 본문에 국한되는 사정으로 인해, “Existing Wells”라는 표현으로 공동참여사업에서 배제시킨 광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해당 광구의 고유 등록번호라든가, 그 광구에 해당하는 넓이 및 위치에 관한 지리학적 설명, 지질학적으로 어떤 지층구간에 국한되는 것인지, 보관탱크나 각종 처리장치와 같은 관련 시설이 그 광구의 일부에 포함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동업자들 간의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³³⁾

C.2. 인수 대상 석유개발 자산 하자 관련 인수금액 조정

통상적으로 자산을 인수할 경우, 인수자가 자산 관련 실사를 하고 실사 중 확인된 각종 하자(예를 들어, 권리 상 하자(title defect), 환경관련 하자(environmental defect) 등)가 합의된 기간 내에 치유되지 않으면 인수금액 조정이 일어나도록 한다.

KKR-EXCO PA에서는, KKR이 CHK PSA의 계약당사자가 아닌 바, (i) 인수대상 자산의 각종 하자에 대해 KKR은 EXCO의 실사 결과에 기본적으로 의존하고 (ii) KKR-EXCO PA상의 “계약완결 후 인수금액 조정”(post-closing adjustment)은 CHK PSA하에 EXCO와 Chesapeake간에 합의되는 “계약완결 후 인수금액 최종조정”(final accounting)³⁴⁾을 기준으로 이뤄진다.³⁵⁾ 하지만, EXCO가 제시한 인수금액 조정안에 대해 KKR이 이의를 제기하고 양자 간 이견이 원만하게 합의 조정되지 않는 경우, 독립적인 컨설턴트(Consultant)를 선임해서 CHK PSA에 따라 정해진 최종조정 금액 범위 내에서 KKR과 EXCO 중 어느 당사자에게 그 금액이 배분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확정한다.³⁶⁾

31) 각주 26 참고

32) KKR-EXCO PA Recital (C), (D), (E) 및 (F)항 참고

33) 각주 26 참고

34) CHK PSA 2.8조 참고

35) KKR-EXCO PA 2.6조 참고

36) KKR-EXCO PA 2.6조 (b)항 및 (c)항 참고

예를 들어, CHK PSA하의 “계약완결 후 인수금액 최종조정”(final accounting)에 따라 Chesapeake가 EXCO에게 미화1백만 불을 돌려준 경우, 그 미화1백만 불의 대상이 된 자산이 EXCO 단독 보유 자산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KKR과 EXCO의 공동 보유 자산에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미화1백만불 수령자가 정해질 것이다.

그런데, EXCO는 그 대상 자산이 자신이 단독으로 보유하는 자산 관련이라는 입장인데 반해 KKR은 공동 보유 자산 관련이라는 입장이라면, 그 금액의 대상 자산이 어느 것인지에 관해 컨설턴트가 판단해 준 것에 따라 확정한다는 것이다.

C.3. 제3자 동의가 필요한 권리 이전 (KKR-EXCO PA 계약완결 관련)

CHK PSA하에 Chesapeake는 Area 1 Leases 50% 지분을 Admiral Acquisition Sub³⁷⁾에게 매각하고, KKR-EXCO PA하에 EXCO는 Admiral Acquisition Sub 지분 100%를 KKR에게 매각하는 거래가 동시에 일어난다.³⁸⁾ KKR-EXCO PA에는 Area 1 Leases 중 Chesapeake가 Admiral Acquisition Sub에게 권리 이전을 하기 위해 제3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³⁹⁾ 어떤 리스에 복수의 지분참여자가 있고 한 참여자가 제3자에게 지분 매각을 할 경우 다른 참여자(들)이 선취권을 보유하는 경우가 그 예가 된다.

기본적으로는, 그 제3자 동의를 계약완결 시점까지 받지 못한 경우, EXCO가 제3자 동의 확보를 독려하도록 규정한다.⁴⁰⁾

KKR-EXCO PA에 규정한 특정 리스, 즉 “Required Consent Lease” 및 “Subject Required Consent Lease”는 권리 이전이 되지 못할 경우 미화로 수백만 불에서 수천만 불을 인수금액에서 감액하거나 KKR에게 반납하기로 한 것⁴¹⁾을 보면, 상당히 가치가 있는 자산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 리스 경우, 거래완결 시점에 제3자 동의를 받지 못하면 거래완결 시점에서는 해당 리스를 Admiral Acquisition Sub에게 이전되는 대상에서 일단 제외한다.⁴²⁾

37) Area 1 Leases(Area 1 리스) 50% 인수를 위해 EXCO가 설립한 회사임.

38) KKR-EXCO PA Recitals D항 및 F항 참고.

39) KKR-EXCO PA 2.7조 참고

40) KKR-EXCO PA 2.7조 (a)항 참고

41) KKR-EXCO PA 2.7조(b)항, (e)항 및 (f)항 참고

Subject Required Consent Lease가 거래완결 시점에서 제3자 동의 부재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미화1억3천3백만불(US\$133,000,000)로 정한 기본인수금액(이하, “**Base Purchase Price**”)에서 “**Consent Lease Deduction**”이라고 정의한 금액(즉, 미화3천5백만5십6만4천2백8십불(US\$35,564,280)만큼)이 감액된다.⁴³⁾ 반면, Required Consent Lease는 거래완결 시점에서 제3자 동의 부재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Base Purchase Price 조정이 되지는 않는다.⁴⁴⁾

동의기간(이하, “**Consent Period**”)⁴⁵⁾ 내에 Subject Required Consent Lease 또는 Required Consent Lease에 대한 제3자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Admiral Acquisition Sub 1, Admiral Acquisition Sub 2 또는 Admiral Acquisition Sub 3 중 하나에게 Chesapeake이 50% 지분에 대한 권리 이전을 하고, 권리 이전을 받은 회사를 KKR이 (Subject Required Consent Lease 경우 관련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인수하도록 한다.⁴⁶⁾

Required Consent Lease 경우, 계약완결 시점에 이전이 되지 않더라도 Base Purchase Price에서 공제하지 않았으므로,⁴⁷⁾ Consent Period가 만료될 때까지 제3자 동의를 받지 못해 KKR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될 경우, EXCO가 해당 리스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KKR에게 반환하도록 정해 둔 것⁴⁸⁾은 당연해 보인다. 반면, Subject Required Consent Lease 경우, Consent Period가 만료될 때까지 제3자 동의를 받지 못해 KKR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될 경우, 계약완결 시점에 Consent Lease Deduction에 해당하는 금액(즉, 미화 3천5백여만불)을 EXCO가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와 동일한 금액을 오히려 KKR에게 지불하도록 규정⁴⁹⁾하고 있는 바, 이 조항이 착오에 의해 삽입된 것이 아니라면, EXCO에게는 매우 독소적인 조항인 것으로 보인다.

42) KKR-EXCO PA 2.7조(b)항 참고

43) KKR-EXCO PA 2.7조(b)항 참고

44) KKR-EXCO PA 2.7조(b)항 참고

45) KKR-EXCO PA 2.7조(c)항 “**Consent Period**”(동의기간) 정의(CHK PSA에 따른 거래완결일로부터 180일 이내 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그 보다 더 긴 기간) 참고

46) KKR-EXCO PA 2.7조(c)항 및 (d)항 참고

47) KKR-EXCO PA 2.7조(b)항 참고

48) KKR-EXCO PA 2.7조(f)항 참고

49) KKR-EXCO PA 2.7조(e)항 참고

C.4. 자산 가치 할당

일반적인 자산인수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석유개발 자산을 자산인수 방식으로 인수할 경우, 전체 인수금액을 기준으로 각 자산에 대한 가치 할당이 매우 중요하다. 세금 목적상, 각 자산 별 매입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어 예를 들어 향후 해당 자산 별 공제가 있을 경우 공제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KKR-EXCO PA 경우, 자산별 가치는 CHK PSA에서 정한 자산별 가치라고 규정되어 있다.⁵⁰⁾

D. 상호관심지역(Areas of Mutual Interest; 이하, “AMI”)

동업자들 간의 경쟁을 방지하고 특정 지역에서 같은 이해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어떤 동업자가 석유개발 리스(oil & gas lease)를 취득할 경우, 현재 사업 참여 지분 비율과 동일하게 그리고 그에 비례한 비용보상을 통해 다른 동업자도 신규 취득한 리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한다.⁵¹⁾ 이에 관련된 AMI합의는 통상적으로 지분 및 취득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여부, 취득한 지분을 다른 회사에게 배분하는 절차, AMI합의서 존속기간 및 AMI대상지역을 포함한다.⁵²⁾

KKR-EXCO PA에도 AMI합의가 포함되어 있다.⁵³⁾ 특히 사항은, EXCO 경우, HGI Energy Holdings, LLC(이하, “HGI”)라는 회사와 기존에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이미 HGI와 AMI합의가 있어서, EXCO가 AMI에서 리스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HGI에게 우선적으로 기회제공을 하도록 허용해 두었다.⁵⁴⁾ EXCO와 HGI간의 AMI합의 대상지역이 KKR-EXCO PA하의 AMI합의 대상지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해 둔 것으로 추측된다.

KKR-EXCO PA에 규정된 AMI합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⁵⁵⁾

50) KKR-EXCO PA 1조 “Allocated Value”(할당 가치) 정의 참고

51) 각주 22 Villarreal, page 339 참고

52) Bredthauer, Cole, “Area of Mutual Interest Agreements: Avoiding Property Description Pitfalls” (상호관심지역합의서: 부동산 지적정보 오류 방지하기) in Oil and Gas Update published by Thompson & Knight (2013) (available at <http://www.tkoilandgasupdate.com/2013/02/area-of-mutual-interest-agreements-avoiding-property-description-pitfalls.html>)

53) KKR-EXCO PA Article 7 참고

54) KKR-EXCO PA 7.1조 참고

- (1) KKR-EXCO PA 첨부A 지역에 소재한 토지에서의 석유개발 권한(이하, “Acquired Interest”)을 확보한 일방 당사자(이하 “Acquiring Party”)는 AMI Offer Notice 라는 지분인수 기회에 대한 통지(이하, “AMI Offer Notice”)를 다른 당사자(이하, “Non-Acquiring Party”)에게 해야 한다.
- (2) 취득지역 관련하여 다른 제3자 권리(예를 들어 선매권)의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Non-Acquiring Party는 그 Acquired Interest(이하, “AMI Offered Interest”)를 자기 지분율에 비례해서 Acquiring Party가 부담한 것과 동일한 조건 으로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 (3) Non-Acquiring Party가 AMI Offer Notice를 받고 취득 거부 또는 실패할 경우, 해당 자산은 KKR-EXCO PA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4) Non-Acquiring Party가 AMI Offer Notice를 받고 15영업일 내에 취득 의사를 표명하면, 지분이전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지분이전 절차를 개시한다.
- (5) 지분양도계약(farmout agreement)에 의거한 지분취득에 Non-Acquiring Party 가 참여할 경우, 그 지분양도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 의무에 Non-Acquiring Party 가 자신의 지분만큼 부담하면서 참여한다.
- (6) Acquiring Party가 현금이 아닌 조건으로 취득한다거나 package deal 차원에서 취득하는 것일 경우, 현금가격을 Non-Acquiring Party에게 통지해주어야 하고 그 금액을 Non-Acquiring Party가 지급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다. Package deal 경우, package deal이 완결되어야 Non-Acquiring Party가 인수할 수 있다. 물론, Non-Acquiring Party는 Acquiring Party가 제시한 현금가격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독립적인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해결한다.
- (7) 계열사 간 거래라든지 제3자 동의 거부로 인해 불발된 거래가 발생할 경우, AMI 적용이 되지 않으며, 취득한 자산에 대한 운영권자는 EXCO가 되도록 노력한다.

55) KKR-EXCO PA 7.2조-7.7조 참고

E. 유정 제안(Well Proposal)

유정제안(well proposal)이란 유정에 관련된 시추(drilling), 유정 완결(well completion) 등을 포함한 각종 작업을 제안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업자 각자가 상대방에게 유정 제안(well proposal)을 할 수 있는 방식과 동업자 중 운영권자 역할을 하는 자만이 유정 제안(well proposal)을 할 수 있는 방식이 가능하다.⁵⁶⁾ KKR-EXCO PA 경우 통상적으로는 EXCO가 운영권자로서 유정 제안(well proposal)을 하도록 정하고, “Area 1” 지역 내 작업으로서 Qualifying Well Criteria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KKR도 유정 제안(well proposal)을 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다.⁵⁷⁾

한편, 유정 제안(well proposal)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업자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 PA를 체결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개발에 대한 위험은 회피하고 동업을 통한 혜택은 유지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에 대해 PA에서는 일반적인 공동작업계약(joint operating agreement)에서의 작업참여거부자(non-consenting party)에게 부과하는 제재조치보다 더 심한 제재조치(예를 들어, 지분 몰수)를 부과하기도 한다.⁵⁸⁾

이에 비해, KKR-EXCO PA를 보면, KKR은 여러 모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안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KKR은 필요할 경우, 자신도 유정 제안(well proposal)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KKR이 승인한 작업 이외의 작업에 대해 EXCO가 D&C AFE 또는 AFE를 제안하면 KKR이 (제재를 받지 않고) 수락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해 두었다.⁵⁹⁾

F. 개발계획(Development Plan) 및 시추제안

미국의 석유개발 리스(oil & gas lease)는 일정기간 내에 개발을 하지 않는 경우 리스가 종료되는 방식인 바, 사업성 유지를 위해 신속한 시추 및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담보

56) 각주 22 Villarreal, page 343 참고

57) KKR-EXCO PA 4.1조(d)항 및 (f)항 참고. [4.1조에 있는 항명이 (a)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은 이 계약서 작성자의 워드 작업상 실수로 인한 것으로 보임]

58) 각주 22 Villarreal, page 345 참고

59) KKR-EXCO PA 4.1조(b)항 [Form 10-Q에 첨부된 양식상으로는 4.1조(e)항] 참고

하는 방안으로 PA 동업자들은 개발계획 작성을 합의하기도 한다.⁶⁰⁾ 개발계획은 일정 기간 단위로 작성되며, 그 기간에 실시될 작업을 정하는 것이다.⁶¹⁾ 대상 지역이 넓은 경우, 개발계획은 각 탐사유망지역 별로 작성되기도 한다.⁶²⁾

KKR-EXCO PA에서는 (계약 완결로부터 1년 기간에 대한 작업 계획은 미리 확정시켜 두고) 2014년1월부터 시작하는 때 Quarter마다 직후 Quarter 작업 계획(Next Quarter Detail Plan)과 그에 연결된 2분기부터 4분기 작업 계획(Quarter 2-4 Scoping Plan)을 EXCO가 작성해서 KKR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한다.⁶³⁾ 그리고, 각 작업 계획은 KKR이 참여하고 있는 Area 1 Leases 뿐만 아니라 KKR이 CHK PSA 완결 당시 참여하지 않지만 EXCO가 인수한 리스에 대한 시추 계획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추 예정 유정의 Qualifying Well Criteria 해당 유무를 불문하고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⁶⁴⁾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 시추(drilling)를 통해 생산 유정(producing well)을 만들어 내야 하는 바, Eagle Ford Formation에서 생산된 석유 유가가 “Area 1 Development Period” 중 45일 넘게 배럴당 미화70불(US\$70) 아래로 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된 4개의 Quarter의 각 Quarter마다 최소한 40개의 적합 유정(이하, “Qualifying Wells”)에 관한 경비지출 승인요청서(이하, “D&C AFE”)를 EXCO가 KKR에게 제안하도록 정해 두었다.⁶⁵⁾

G. 승인된 유정에 대한 지분 양도

G.1. 승인된 유정에 대한 지분 양도 - 생산 이전

시작 부분에 언급한 바와 같이, KKR-EXCO PA는 석유개발업체와 금융업체가 동업자를 구성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금융업체인 KKR은 단기간내의 투자수익 실현을 위해 일련의 방법을 KKR-EXCO PA에 담아 두었다. 앞서 살펴본, 작업 계획 승인이라던가

60) 각주 22 Villarreal, page 348 참고

61) 각주 22 Villarreal, page 348 참고

62) 각주 22 Villarreal, page 348 참고

63) KKR-EXCO PA 3.1조 및 3.2조 참고

64) KKR-EXCO PA 3.1조(c)항 및 (d)항 참고

65) KKR-EXCO PA 5.4조(i)항 참고 [5.4조에 있는 항명이 (a)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은 이 계약서 작성자의 워드 작업상 실수로 인한 것으로 보임]

EXCO로 하여금 최소 시추제한 물량을 정해 둔 것 등도 그 방법의 일환이다. 그 후, 시추(drilling)를 위한 비용 지분이 시작되면서, KKR은 개별 유정(well)에 대한 보유 지분을 기존의 50%에서 75%로 확대한다.⁶⁶⁾

즉, KKR-EXCO PA에서 KKR은 해당 석유개발 리스가 아니라 그 리스에 위치한 개별 유정(well)에 대한 보유 지분을 높이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특히, CHK PSA에서 생산 유정을 배제한 Area 1 Leases에서 KKR의 승인하에 신규 시추(drilling)를 하는 유정(이하, “**Approved Area 1 Well**”) 경우, KKR은 정공 양도(wellbore assignment)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보유 지분율을 증가시킨다.⁶⁷⁾

정공(wellbore)은 원유나 가스 탐사 및 생산을 위해 천공된 구멍을 의미하는 표현이다.⁶⁸⁾ 정공 양도는 리스 전체가 아닌 특정 유정(well)에 국한된 리스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⁶⁹⁾ 정공 양도에 관련된 분쟁을 다룬 사건인 Petro Pro Ltd. 대 Upland Resources, Inc. 사건에서 법원은 지층깊이제한(depth limitation) 표기 없이 특정 유정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의 권리는 양수 당시 생산되고 있던 지층 및 그 상부 지층에 대한 권리만을 가지며 생산 지층 하부에 대해서는 개발권한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⁷⁰⁾ 정공 양도는 양수인의 권리 범위에 대해 여러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분야인바,⁷¹⁾ 정공 양도에 관한 양도서류 작성시 양수인의 권리 범위에 대한 합의 사항이 잘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⁷²⁾

KKR-EXCO PA 경우, 이에 관한 양식이 (자료 접근이 힘든) 별첨사항이어서 어떤 식으로 규정해 두었는지를 검토해 보지는 못했다. 어쨌든, 수평정시추(horizontal drilling)

66) KKR-EXCO PA 4.2조 참고

67) KKR-EXCO PA 4.2조 (a)항 참고

68) <http://en.wikipedia.org/wiki/Wellbore> 참고

69) Pierce, David E., “Evaluating and Drafting Oil & Gas Lease Assignments”(석유 및 가스 리스 양도계약 평가 및 작성), NADOA (National Association of Division Order Analysts) 1992 Annual Institute (1992), page 425 참고

70) Petro Pro Ltd. v. Upland Res., Inc., 279 S.W.3d 743 (Tex. App. - Amarillo 2007).

71) Drumm, David, “Wellbore Assignments - Some Guidance At Last,”(정두상의 양도 - 이제야 논하는 지침서) in No. 3 - Fall 2009 issue of “Capital” published by Carrington Coleman Sloman & Blumenthal (2009).

72) Hilton, Frank, et al., “Wellbore Assignments in Title Examination,” (부동산 권리 검토에 있어서의 정두상의 양도) in the manual of the Special Institute on Advanced Mineral Title Examination published by the Rocky Mountain Mineral Law Foundation (2014), pages 12-14 참고

이 기본적인 시추(drilling) 방법이 되어 있는 셰일지층 석유개발에 있어서, 정공 양도상의 양수인이 수평정시추 관련 작업을 다른 권리와 상충되지 않게 시행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KKR-EXCO PA에 규정된 승인된 유정 양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 (1) Approved Area 1 Well⁷³⁾: 첫 월단위청구서에 따른 부담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EXCO가 Approved Area 1 Well에 관해 보유한 자신 지분의 50%(즉, 100%를 기준으로 50%를 가지고 있던 EXCO가 그 50%의 절반에 해당하는 전체 기준 25%)를 정공 양도 방식으로 KKR에게 양도하여, 그 결과 그 유정(well)을 KKR은 75%, EXCO는 25% 소유하게 된다. 물론, 각 당사자의 향후 비용 부담은 이 조정된 비율에 따른다.
- (2) 승인된 Farmout지역 유정(이하, “Approved Farmout Well”)⁷⁴⁾: 첫 월단위청구서에 따른 부담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i) Approved Farmout Well 및 (ii) 이에 관련되어 만들어지거나 만들 예정인 단위(unit)⁷⁵⁾에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Farmout Agreement에 대해 EXCO가 보유한 자신 지분의 50%(즉, 100%를 기준으로 50%를 가지고 있던 EXCO가 그 50%의 절반에 해당하는 전체 기준 25%)를 양도하여, 그 결과 그 유정(well) 및 단위(unit)을 KKR은 75%, EXCO는 25% 소유하게 된다. 물론, 각 당사자의 향후 비용 부담은 이 조정된 비율에 따른다.
- (3) 승인된 비주력지역 유정(이하, “Approved Non-Core Well”)⁷⁶⁾: 첫 월단위청구서에 따른 부담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EXCO가 Approved Non-Core Well에 관해 보유한 자신 지분의 50%(즉, 100%를 기준으로 50%를 가지고 있던 EXCO가 그 50%의 절반에 해당하는 전체 기준 25%)를 정공 양도에 유사한 방식으로 KKR

73) KKR-EXCO PA 4.2조 (a)항 참고

74) KKR-EXCO PA 4.2조 (b)항 참고

75) 미국 석유개발 업계에서 unit이라는 개념은 무질서한 난개발로 인한 낭비를 방지하고자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또는 자율적으로 합의되는 방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텍사스주 경우, 시추공 위치는 기존 시추공 또는 유정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시추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drilling unit) 그리고 생산유정 경우 생산량을 통제 받도록(proration unit) 하는데, 이는 좁은 지역에 각자 이해가 다른 유정들이 위치하여 지하 압력 유지에 실패할 경우, 자연적인 압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석유량이 줄어드는 일종의 난개발로 인한 낭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unit에 포함될 경우, unit 참여자들 간에 적절한 배분이 합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76) KKR-EXCO PA 4.2조 (c)항 참고

에게 양도하여, 그 결과 그 유정(well)을 KKR은 75%, EXCO는 25% 소유하게 된다. 물론, 각 당사자의 향후 비용 부담은 이 조정된 비율에 따른다.

상기와 같이 양도가 진행된 후 각 승인된 유정 관련 시추비를 각 당사자의 참여 지분 (working interest) 몫에 비례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⁷⁷⁾ 원칙적으로는 운영계약(이하, “**Operating Agreement**”)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⁷⁸⁾ EXCO가 KKR-EXCO PA 4.1조 (e)항에 따라 KKR에게 비용청구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Operating Agreement에 따른 부담 방식이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KKR-EXCO PA 규정에 따라 KKR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만 KKR이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보인다.⁷⁹⁾

KKR-EXCO PA에는 상기와 같은 양도에 관련하여 이전 대상 권리에 대한 특별보증 (special warranty)을 요구하고 있다. 즉, KKR-EXCO PA에 따라 어떤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일 기준으로 EXCO 및 그 관계사가 EXCO 생산 몫에 대해 받는 판매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원유와 가스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선물계약이나 판매 강제옵션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라고 한다.⁸⁰⁾ 이는 미국 세일자산거래 시에 매수입이 차입을 통해 인수를 한 경우, 미래 현물가격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장기선물계약 등을 통해 헷징을 하는 거래 행태를 고려한 문구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헷징이 있는 경우, EXCO로부터 양도받는 유정에 KKR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 제삼자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는 의미인 바,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고 싶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G.2. 승인된 유정의 양도 - 생산 이후

KKR-EXCO PA에서는 제안기간(이하, “**Offer Period**”)⁸¹⁾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77) KKR-EXCO PA 4.2조 (d)항 참고

78) KKR-EXCO PA 4.2조 (d)항 참고

79) Form 10-Q에 첨부된 양식상으로는 4.1조(h)항 참고

80) KKR-EXCO PA 4.7조 참고

81) KKR-EXCO PA 1조 정의 참고. (Offer Period를 “**첫생산연도(First Production Year: KKR-EXCO PA상의 계약완결일로부터 그 계약완결일이 발생한 Quarter 직후 4개의 Quarter를 포함하는 기간) 직후 Quarter**에서 시작해서 EXCO가 Area 1 개발기간(Area 1 Development Period: KKR-EXCO PA상의 계약완결일로부터 (i) 5년이 되는 날과 (ii) Area 1 Leases에서 EXCO가 240개의 유정을 시추하고, 생산을 위한 유정완결 작업 및 시설 설치를 한 시점 중 우선하는 날까지 기간) 내에 시추, 유정완결, 시설설치가 된 Offer Well 각각에 대한 KKR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이라고 정의해 둠). 즉, KKR-EXCO PA상의 계약

Offer Period 기간 중 각 Quarter 말에 “그날 기준으로 최소 365일 전에 생산이 개시된 유정”(이하, “Offer Well”)을 대상으로, 1년 중 최소 75% 기간 동안 하루5배럴이상 생산이 있었던 유정은 “Committed Wells”로 분류하고 기타 유정은 “Uncertainty Wells”로 분류한다.⁸²⁾ 그 Quarter 말 직후 달력 월 마지막 영업일 또는 이전에, EXCO는 Committed Wells 및 Uncertainty Wells에 대한 KKR 지분을 공정시장가격(이하, “Fair Market Value”)에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하도록 해 두었다.⁸³⁾

자산양수도 거래에서 공정시장가격이라는 잣대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어떤 가격이 공정시장가격인지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을 경우 이에 관한 분쟁이 초래될 수 있다. Fair Market Value에 관해, KKR-EXCO PA에서는 자세한 규정을 두어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고 있다.⁸⁴⁾ KKR-EXCO PA에 있는 Fair Market Value 정의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인수제안 일자에 정해진 “Proved Developed Producing Reserves”(증명되고 개발되고 생산중인 매장량)와 “Probable Developed Producing Reserves”(확률상 긍정적이고 개발되고 생산중인 매장량)를 각각 10% 할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가치의 평균값이라고 되어 있다.⁸⁵⁾ Proved Developed Producing Reserves와 Probable Developed Producing Reserves는 현재 생산중인 유정에 있는 매장량에 대해 기술적인 가채가능 확률을 기준으로 분류한 매장량 개념이다. 이와 같이, KKR-EXCO PA는 기술적인 기준에 근거한 가치 산정 방법을 이용하여 Fair Market Value를 규정함으로써 Fair Market Value에 관한 당사자들의 이견이 있더라도 제3자 컨설턴트를 통한 기술적 판정을 받아 결정할 수 있는 구도를 담아 둔 것이다.⁸⁶⁾

앞서와 같은 EXCO의 제안(이하, “EXCO Offer”) 수령 후 15영업일 이내에 Fair Market Value에 대해 KKR은 이견을 제시할 수 있고,⁸⁷⁾ Fair Market Value에 대한 상호 합의 또는 분쟁 해결이 된 후 15영업일 이내에 KKR은, 만약 Fair Market Value가 시추투자회수금액(이하, “Drilling Capital Return Amount”)⁸⁸⁾보다 적을 경우, EXCO

완결일이 2013년8월31일이었다고 한다면, 첫생산연도는 2014년9월31일까지 기간이므로, 2014년의 4번째 Quarter부터 Offer Period가 시작되는 것임.

82) KKR-EXCO PA 6.1조 참고

83) KKR-EXCO PA 6.2조 참고

84) KKR-EXCO PA 1조 정의 참고

85) KKR-EXCO PA 1조 정의 참고

86) KKR-EXCO PA 6.9조 참고

87) KKR-EXCO PA 6.3조 참고

Offer 수용을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EXCO는 그 거절이 있는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Drilling Capital Return Amount를 매입가격으로 하는 인수제안을 KKR에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KKR은 Drilling Capital Return Amount를 매도가격으로 하는 양도를 해야 한다.⁸⁹⁾

KKR이 EXCO Offer 수용을 거절하여 계속 KKR이 지분보유를 하는 유정(이하, “Retained Wells”)에 대해 Offer Period 중 첫 4개의 Quarter 기간 중에 Retained Wells 인수제안(이하, “First Year Retained Well Offer”)을 EXCO가 하는 경우, 그 시점에 갱신된 최근 Fair Market Value를 인수가격으로 제안해야 하고,⁹⁰⁾ 그 Fair Market Value에 대한 상호 합의 내지 분쟁 해결이 된 후 15영업일 이내에 KKR은, 만약 Fair Market Value가 Drilling Capital Return Amount보다 적을 경우, First Year Retained Well Offer 수용을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EXCO는 그 거절이 있는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Drilling Capital Return Amount를 매입가격으로 하는 인수제안을 KKR에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KKR은 Drilling Capital Return Amount를 매도가격으로 하는 양도를 해야 한다.⁹¹⁾ First Year Retained Well Offer 기간 이후에도 EXCO는 Retained Well 인수제안을 할 수 있고, KKR은 수용이나 거부 여부를 자신의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⁹²⁾

Area 1에 소재한 (EXCO Offer 경우) Committed Wells와 (Retained Well Offer 경우) Retained Wells로서 KKR-EXCO PA 6조 절차에 따라 EXCO가 인수하는 유정들에 대해서는, KKR이 최대15%까지 지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두었다.⁹³⁾ 이러한 지분 유지는 관련 인수제안에 포함된 유정 그룹 단위에 대해 행사하도록 하여,⁹⁴⁾ 그 유정 단위에 포함된 개별 유정을 선택해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두었다.

KKR이 EXCO의 인수제안을 수용하거나 수용한 것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KKR은 특별보증(special warranty)과 함께 양도서류를 통해 EXCO에게 양도해야 한다.⁹⁵⁾ 여기 언급된 특별보증은 상기 IV(G)(i)에 설명된 것과 동일한 사항을 의미한다.

88) EXCO Offer에 포함된 Committed Wells 또는 Retained Wells에 대해 KKR이 시추비용등을 부담한 금액에 1.2배를 곱한 금액이 KKR이 관련 유정에서 배당 받은 순이익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

89) KKR-EXCO PA 6.4조 참고

90) KKR-EXCO PA 6.5조 참고

91) KKR-EXCO PA 6.4조 참고

92) KKR-EXCO PA 6.5조 참고

93) KKR-EXCO PA 6.6조 참고

94) KKR-EXCO PA 6.6조 참고

양도유효시점(이하, “Transfer Effective Date”)은 KKR이 EXCO의 인수제안을 수용하거나 수용한 것으로 간주된 날 직전 Quarter 말일로 정한다.⁹⁶⁾ 양도시점은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소득 및 비용 정산 등과 같은 회계처리 및 세금 정산을 위한 기준점 역할을 하는 바, 자산양수도 거래 시 이에 관한 언급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KKR은 해당 Transfer Effective Date으로부터 1년 내에 어느 때든 KKR이 EXCO에 계 양도한 Offer Wells에 관련된 회계자료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며, 회계자료 심사에서 발견된 오류에 대해 오류 결정 후 10 영업일 이내에 정산하기로 한다.⁹⁷⁾ 양도가 일어난 후 1년이라는 긴 기간을 회계심사 기간으로 허용하는 이유는 용역업체 청구서와 같은 비용 관련 자료가 청구시기 문제로 제 시간에 기록에 잡히지 않는다는 등 용역이 여러 유정을 대상으로 실시된 경우 적정 배분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다양한 현장 운영 관련 문제가 있음을 감안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Fair Market Value가 Drilling Capital Return Amount과 같거나 또는 더 높을 경우, KKR은 EXCO Offer에 응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다만, 이럴 경우, EXCO는 Fair Market Value 전액을 KKR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i) Drilling Capital Return Amount와 (ii) Fair Market Value와 Drilling Capital Return Amount간 차액의 66.6667%의 합산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해 두고 있다.⁹⁸⁾

H. 각종 시설

원유나 가스를 유정에서 생산하기 위한 각종 시설을 대상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동업자가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시설을 대상지역 유정을 위해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KKR-EXCO PA에서는 그 시설을 다음과 같이 구분 정의하고 접근권(access)과 사용료(fee) 등을 규정 한다:

95) KKR-EXCO PA 6.7조(a)항 참고

96) KKR-EXCO PA 6.7조(a)항 참고

97) KKR-EXCO PA 6.7조(c)항 참고

98) KKR-EXCO PA 6.8조 참고

- (1) 중앙생산시설(이하, “**Central Production Facilities**”): 복수의 유정을 위해 사용되는 현장생산시설로서, Field Electrification Facilities를 제외한 것이라고 정의한다.⁹⁹⁾ Central Production Facilities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예상 비용에 근거하고, 해당 시설을 사용할 예상 유정 숫자 대비 Approved Wells(승인된 유정; 개발비용 지출이 승인된 유정)에 할당되는 비용에 대해 KKR과 EXCO간에 합의해서 결정한다.
- (2) 현장전기시설(이하, “**Field Electrification Facilities**”): 복수의 유정을 위해 사용되는 전기 공급 시설이라고 정의한다.¹⁰⁰⁾ Field Electrification Facilities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예상 비용에 근거하고, 해당 시설을 사용할 예상 유정 숫자 대비 Approved Wells에 할당되는 비용에 대해 KKR과 EXCO간에 합의해서 결정한다.
- (3) 유정시설(이하, “**Well Facilities**”): 유정의 정두(wellhead)¹⁰¹⁾에서 (i) 가스일 경우, 가스미터기의 배출구 밸브(outlet valve) 그리고 (ii) 원유일 경우, 원유탱크와 물탱크 각각의 배출구 밸브(outlet valve) 사이에 있는 각종 고무관, 파이프라인, 미터기, 불순물분리장치, 히터, 증류기체회수시설, 탱크 등의 시설이라고 정의한다.¹⁰²⁾ 제3자 동의 또는 승인이 필요하면 이를 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EXCO는 Approved Well 개발, 운영 및 생산에 관해 (Approved Well에서 생산될 KKR 생산물을 위해 CHK PSA 계약완결 당시 설치 완료되었거나 설치 비용지출이 승인된) Well Facilities에 대한 접근권을 KKR에게 보장하며, EXCO가 그 Well Facilities 운영을 위해 제삼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한 KKR 할당 금액 이외에는 KKR이 추가 부담을 하지 않는다. Well Facilities 운영유지비는 그 시설이 사용되는 모든 생산 유정에 배분하되 생산유정 숫자에 비례해서 결정한다.
- (4) 미드스트림시설(이하, “**Midstream Facilities**”): Well Facilities 하류 시설에 해당하는 소금물처리시설과 기타 가스/원유 집하시설 등을 의미한다.¹⁰³⁾ 제3자 동의 또는 승인이 필요하면 이를 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EXCO는 Approved Well 개발, 운영 및 생산에 관해 (Approved Well에서 생산될 KKR 생산물을 위해 CHK PSA

99) KKR-EXCO PA 1조 정의 참고

100) KKR-EXCO PA 1조 정의 참고

101) 일반적으로 유정 상단부에 위치한 밸브 장치를 지칭함.

102) KKR-EXCO PA 1조 정의 참고

103) KKR-EXCO PA 1조 정의 참고

계약완결 당시 설치 완료되었거나 설치 비용지출이 승인된) Midstream Facilities에 대한 접근권을 KKR에게 보장하며, EXCO가 그 Midstream Facilities 운영을 위해 제삼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한 KKR 할당 금액 이외에는 KKR이 추가 부담을 하지 않는다. Midstream Facilities 운영유지비는 그 시설이 사용되는 모든 생산 유정에 배분하되 생산유정 숫자에 비례해서 결정한다. 계약완결 이후 EXCO나 그 계열사가 참여할 권한 있는 제삼자 또는 EXCO 또는 그 계열사가 계약완결 이후 Approved Well 관련 사용목적으로 Midstream Facilities 설치를 제안할 경우, KKR은 그 시설에 최대 75%까지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KKR이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경우, 사용에 관해 상호 합의된 사용료를 지불한다.

동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일지라도 동업자간에 권리가 설정된 대상지층(target formation)이 다르고 동시에 개발이 이뤄지는 경우, 대상지층 구분 없이 함께 그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지층에 따라 사용에 제한이 있는 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¹⁰⁴⁾ KKR-EXCO PA 경우에는 Approved Well 기준으로만 시설사용을 다루고 있는 바 대상지층에 따른 사용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I. 공동운영계약서

PA가 동업자들 간에 동일 석유개발 자산의 탐사, 개발, 생산 등에 관한 합의사항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해당 광구에 대해 별도의 공동운영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 이유는, 석유개발 사업에서의 동업자들 간의 매우 다양한 권리 의무사항을 공동운영계약서가 폭 넓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KKR-EXCO PA 역시 별도의 공동운영계약서를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참여한 광구에 기존 제3자와 체결된 공동운영계약서가 있을 경우, 그 공동운영계약서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¹⁰⁵⁾ KKR-EXCO PA의 대상 자산이 Chesapeake이 기존에 운영하던 자산이었으므로 그러한 제3자와 체결된 공동운영계약서가 존재할 경우, KKR과 EXCO는 그 계약서를 승계했을 것으로 이해한다.

104) 각주 22 Villarreal, pages 329-330 참고

105) KKR-EXCO PA 5.1조 참고

이 논문 목적상, 방대한 공동운영계약서 내용 전반에 대한 서술은 적절하지 않는 바, 마케팅 관련 사항에 대한 언급만 한다. KKR-EXCO PA 대상자산에서 생산된 석유 마케팅에 관해 기본적으로 13개월 단위로 갱신되는 기간 동안 EXCO가 KKR 물량을 판매하기로 되어 있다.¹⁰⁶⁾ KKR 물량 판매 금액은 같은 자산에서 생산된 EXCO 물량의 판매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다.¹⁰⁷⁾

J. 기타 조항들

모든 계약에서 익숙하게 나타나는 항목인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계약완결선결조건(conditions to closing), 면책조항(indemnification), 양도제한조항(transfer), 계약해지 및 배상(termination and remedies), 기타 일반조항(boilerplate provisions)은 이 논문에 언급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법 개념으로 익숙하지 않은 Covenants Running with Lands (토지에 수반된 약정)에 대한 소개를 한다. KKR-EXCO PA의 14.13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4.13 Covenants Running with Lands.(토지에 수반된 약정). This Agreement and the terms, conditions and covenants hereof shall be deemed to be covenants running with the lands, and a burden upon a Party's interest in the Assets, for the benefit of EXCO's (with respect to the burden on each KKR Party) or each KKR Party's (with respect to the burden on EXCO) interest in the Assets. 본 계약서 및 규정, 조건 및 약정은 토지와 함께 하는 약정으로 간주되며 그리고 자산에 대한 당사자의 지분에 대한 부담으로 간주되며, 이는 (각 KKR 당사자가 부담하는 측면에서) 자산에 대한 EXCO 지분을 위한 혜택이 되고 또는 (EXCO가 부담하는 측면에서) 자산에 대한 각 KKR 당사자 지분을 위한 혜택이 되는 것임.

즉, 토지에 수반된 약정은 토지문제를 다루며 토지에 관련되어 있는(touch and concern the land) 약속(promises)으로서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해당 토지의 후속 양수인을 상대로 법적 행사가 가능한 약속을 의미한다.¹⁰⁸⁾ 임대차계약(lease)은 토지에

106) KKR-EXCO PA 5.14조 참고

107) KKR-EXCO PA 5.14조 참고

관련된 권리이고 PA 당사자들은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 자체 또는 임대차계약 관련 권리를 교환하는 약정을 맺기 때문에, 개발 관련 계약조건이 임대차 계약 관련 권리에 수반됨에 관한 합의를 해둘 경우, 추후에 제3자가 관련 임대차 계약에 관한 권리를 받더라도 그 권리가 PA에 규정된 의무의 제약을 받도록 하는 추가적 보장 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다.¹⁰⁹⁾ 토지에 수반된 약정을 좀 더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PA의 제약을 받는 임대차계약 관련 권리 이전을 하게 될 경우 제3자 양수인이 PA의 제약을 인정하고 인수함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해당 권리의 양수도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함께 기재할 경우 더 확실할 것이라고 한다.¹¹⁰⁾

이 토지에 수반되는 약정 문제는 Midstream 서비스 제공업체와 관련하여 크게 문제가 된 바 있다. Midstream 서비스 회사 경우, 서비스제공을 받는 생산업체들로 부터 acreage dedication(생산지 수송 전담 약정)이라는 것을 받는다. Acreage dedication이라 함은 해당 Midstream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생산업체들이 보유한 leases 및 leases 지역에서 생산된 천연가스 등을 모두 해당 Midstream 서비스 업체의 배관망 및 처리장치를 통해서만 운송, 판매 등을 하겠다는 약정이다. Midstream 서비스 회사가 특정 생산업체의 leases가 있는 지역까지 배관망을 연결하는 등의 고정사업비 투입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특성상, acreage dedication을 토지에 수반되는 약정으로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해 둘 경우, 향후 해당 leases의 생산업체의 변경이 있더라도 Midstream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게 하는 효과 및 더 나아가 해당 leases의 생산업체가 파산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사용계약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효과를 통해 Midstream 서비스회사는 일정한 수익률 보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연방파산법원 사건인 In re Sabine Oil & Gas Corporation(이하, “Sabine Case”)에서 미국연방파산법원 뉴욕 주 남부지법(The United States Bankruptcy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은 쟁점이 된 가스채집계약(gas gathering agreements; 이하 “Gathering Agreements”)에 포함된 acreage dedication이 Texas주법 하의 토지에 수반된 약정에 해당하지 않아서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판결을 하여 acreage dedication에 관한 그간의 이해를 뒤집는 일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¹¹¹⁾

108) 각주 22 Villarreal, pages 373-374 참고

109) 각주 107 참고

110) 각주 107 참고

Gathering Agreements마다 문구 표현의 차이가 있으나, 아래와 같은 dedication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Customer는 자신과, 자신의 관계사 및 각 회사의 양수인 등이 . . . (a) Dedicated Area에 소재한 Dedicated Gas 생산 및 인도에 관해 모든 Leases에서의 채집 및 처리 권한을 . . . [서비스업체]에게 공여 및 약정하고 [서비스업체]에게 이전 및 양도하고 . . . (b) Dedicated Area에 소재한 모든 생산정(wells)에서 현재 또는 미래에 생산되는 모든 Gas를 . . . Receipt Points 후 채집하고 처리할 독점적 권리를 [서비스업체]에게 공여 및 약정하고 [서비스업체]에게 이전 및 양도하고 . . . 그리고 (c) Dedicated Wells, 그 생산정에서 생산된 Gas에 관해 . . . 본 계약 하에 Receipt Points 후 채집 및 처리하기 위해 공여함 . . . (이하, “Dedication”)”

Texas법 하에서는, 생산물과 채집권을 공여하는 것이 부동산물권의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분석이 사실관계와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다. Texas법 하에, 다음 4가지 사항이 있는 경우 약정(covenant)이 토지와 함께 존속한다고 법원에서 판결 했다: (i) 실존하는 물건에 관련된 또는 당사자와 양수인을 구체적으로 구속하는 계약임; (ii) 계약의 최초 당사자들이 해당 사항이 토지와 함께 존속하도록 의도했음; (iii) 관련 부담 조건을 양수한 자가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있음; 및 (iv) 관련 계약이 토지 문제를 다루며 토지에 관련되어 있음(touch and concern the land).¹¹²⁾

Sabine Case에서 법원은 공여(dedication)가 토지 문제를 다루며 토지에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그래서 부동산물권을 만들지 못했으며) 해당 약정이 토지와 함께 존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Gathering Agreements 경우, [서비스업체] 및 계약상대방이 Texas법 요건을 충족하고 Sabine 사건에서 제기된 쟁점을 해소하도록 작성된 것임이 명백하지만, Gathering Agreements가 토지와 함께 존속한다고 법원이 판시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그 공여 문구는 Sabine 사건 이후 생산자와 채집자간에 일반적으로 협의된 문구와 일관되며, 현재 문제시 되는 “touch and concern” 요소

111) <https://www.gibsondunn.com/in-the-pipeline-understanding-post-sabine-midstream-contract-rejection-risk/> 참고; 이하 설명 사항은 이 논문 저자가 업무를 통해 취득한 미국로펌의 의견서 자료를 가공하여 작성한 것임 (비공개자료의 일부여서 출처 언급 생략)

112) Sabine Case에서 약정이 토지와 함께 존속하기 위해서는 horizontal privity(토지 권한 관련 부담을 원 계약자들 간에 설정한 관계) 역시 필요하다는 판결이 있었음.

외에는, Gathering Agreements가 Texas법 하에 토지와 함께 존속하는 약정을 위한 요건을 충족한 형태이다.

만약 생산자 또는 [서비스업체]이 파산신청을 하고, Gathering Agreement의 일방 당사자가 Gathering Agreement를 ‘미이행쌍무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부(rejection)를 하고자 할 경우, Gathering Agreement를 거부(rejection) 대상이 아니도록 하기 위해서는, Gathering Agreement하의 [서비스업체]의 권리가 토지와 함께 존속하는 부동산 물권이라고 법원이 판단해줘야 할 것이다. Gathering Agreements에 강한 공여 문구가 있고 (리스관련 권한까지 언급하고) 게다가 이 조항 외에 그 권리가 (i) 파산에서의 거부(rejection)가 적용되지 않는 토지에 수반된 약정이며, (ii) [서비스업체]에게 부동산물권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며, 및 (iii) 양수인 등에게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도라는 확약문구도 있지만, Gathering Agreements하의 [서비스업체] 권리가 파산을 통해 없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부동산물권이라고 법원이 판단할 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PA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토지에 수반된 약정 문구 역시 향후 파산절차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될 것인지가 확실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V. 결론

PA는 미국 석유 실무 및 관련 법에 대한 지식이 바탕이 될 때 작성할 수 있는 업종 특유의 계약서이다. 셰일지층 석유개발 사업 참여자가 늘어날 경우 PA 활용이 앞으로도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KKR-EXCO PA는 특히 금융이 지분참여자 동업자가 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지에 대한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KKR 경우 개발정 단위로 투자비를 할당하고 개발정 단위로 생산성/수익성을 판단하여 개발정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불리할 경우 생산 개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EXCO에게 해당 개발정 별 KKR 지분을 “KKR 비용부담분 + 알파”식으로 매입하도록 요구하여 수익을 추구

하고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매입 요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구성해 둔 점이다. 이는 개발정에 대한 평가 기술이 수반되어야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KKR-EXCO PA는 상당히 복잡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 금융업체의 수요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사업 참여 방식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자료 - KKR-EXCO PA 목차]

PARTICIPATION AGREEMENT

BY AND BETWEEN

ADMIRAL A HOLDING L.P.,

ADMIRAL B HOLDING L.P.

AND

EXCO OPERATING COMPANY, LP

DATED JULY 31, 2013

Table of Contents

ARTICLE 1 DEFINITIONS

ARTICLE 2 PURCHASE AND SALE

2.1 Purchase and Sale of Initial KKR Assets

2.2 Consideration

2.3 Closing Payment

2.4 Closing Statement

2.5 Closing

2.6 Post-Closing Adjustment

2.7 Consents

2.8 CHK PSA

ARTICLE 3 DEVELOPMENT PLAN; DISPUTE RESOLUTION

3.1 Development Plan and Budget

3.2 Review and Approval

ARTICLE 4 APPROVED WELLS; RIGHT TO PARTICIPATE

- 4.1 Well Proposals
- 4.2 Assignment of Approved Wells
- 4.3 Central Production Facilities
- 4.4 Well Facilities and Midstream Facilities
- 4.5 Drainage
- 4.6 Outside Leases
- 4.7 Assignments

ARTICLE 5 OPERATIONS; MARKETING

- 5.1 Operating Agreements
- 5.2 Operator
- 5.3 HSE Standards
- 5.4 Operations Standard
- 5.5 Liability of Operator
- 5.6 Rentals, Shut-in Well Payments and Royalties
- 5.7 Insurance
- 5.8 Access to Information
- 5.9 Daily Production Reports
- 5.10 Information Provided by EXCO
- 5.11 Information Maintained by EXCO
- 5.12 Access Rights
- 5.13 Third Party Rights
- 5.14 Marketing
- 5.15 Taxes

ARTICLE 6 OFFERS

- 6.1 Well Classification
- 6.2 EXCO Offers
- 6.3 The KKR Parties' Response to EXCO Offers
- 6.4 The KKR Parties' Right to Decline
- 6.5 Retained Well Offers
- 6.6 The KKR Parties' Right to Retain
- 6.7 Transfer of Offer Wells
- 6.8 Allocation of Fair Market Value
- 6.9 Proposed Fair Market Value

ARTICLE 7 ACQUIRED INTERESTS

- 7.1 Area of Mutual Interest
- 7.2 Notice of Acquisitions
- 7.3 Election Right
- 7.4 Farmouts
- 7.5 Non-Cash Acquisitions/Package Acquisitions
- 7.6 Exclusions/Operatorship
- 7.7 Independent Expert

ARTICLE 8 REPRESENTATIONS, WARRANTIES AND AGREEMENTS

- 8.1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 8.2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f the Initial KKR Investors
- 8.3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f EXCO with Respect to EXCO
- 8.4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f EXCO with Respect to Admiral Acquisition Sub

8.5 Compliance Matters

ARTICLE 9 CONDITIONS TO CLOSING

9.1 Conditions to Obligations of the KKR Parties to Closing

9.2 Conditions to Obligations of EXCO to Closing

9.3 Termination

ARTICLE 10 INDEMNIFICATION

10.1 Indemnification of KKR Parties by EXCO

10.2 Indemnification of EXCO by KKR Parties

10.3 Indemnification Procedures

ARTICLE 11 TRANSFER

11.1 Transfer

11.2 Tag Along Right

11.3 Right of First Offer

ARTICLE 12 NOTICES

12.1 Notices

12.2 Daily Notices

ARTICLE 13 TERMINATION AND REMEDIES

13.1 Term

13.2 Notice of Default; Remedies

13.3 Effect of Termination

ARTICLE 14 MISCELLANEOUS

14.1 Entire Agreement

14.2 Amendments

- 14.3 Waiver
- 14.4 KKR Representative
- 14.5 Applicable Law; Venue
- 14.6 Jury Waiver
- 14.7 Reciprocal Liens.
- 14.8 Expenses
- 14.9 Payments
- 14.10 Limitation on Damages
- 14.11 Relationship of Parties
- 14.12 Severability
- 14.13 Covenants Running with Lands
- 14.14 Timing
- 14.15 Successors and Assigns
- 14.16 Announcements
- 14.17 Confidentiality
- 14.18 No Recourse
- 14.19 Further Assurances
- 14.20 Counterpart Execution
- 14.21 Memorandum of Agreement
- 14.22 References and Construction

Exhibits and Schedules

- Exhibit A Area of Mutual Interest Area
- Exhibit B List of Area 1 Leases
- Exhibit C EXCO Assignment

Exhibit D-1	List of Outside Non-Core Leases, Non-Core Units and Retained Tracts
Exhibit D-2	List of Farmout Leases
Exhibit E	KKR Assignment
Exhibit F	Farmout Agreement
Exhibit G	Existing Wells
Exhibit H	PV-10 Value
Exhibit I	Initial Development Plan
Exhibit J-1	Representative Artificial Lift AFE
Exhibit J-2	Representative D&C AFE
Exhibit K	Form of EXCO Area 1 Assignment
Exhibit L-1	Form of EXCO Farmout Assignment
Exhibit L-2	Form of EXCO Non-Core Well Assignment
Exhibit M	Assets Operating Agreement
Exhibit N	Insurance
Exhibit O	Form of Third Party Rights Waiver
Exhibit P	Form of KKR Parties Approved Wells Assignment
Exhibit Q	Form of Share Assignment
Exhibit R	Tax Partnership Agreement
Exhibit S	Memorandum of Agreement
Schedule 1.1	KKR Parties; Proportionate Share
Schedule 1.2	KKR Knowledge Persons
Schedule 5.10	EXCO Provided Information
Schedule 14.9	Bank Account Information